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 12. 2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승 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

나. 제 출 일 : 2009. 11. 16

다. 위원회회부 : 2009. 11. 19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도로상의 원활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1)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변경 (안 제1조)

2)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변경 (안 제4조)

나.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를 명문화 함. (안 제2조)

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함.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문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9.10.08 ~ 10.28) 결과, 의견제출 없음

5. 조례안 검토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와 일치시키고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여 도로상의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제출한 것으로

○ 조례 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제명 등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문구를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도로법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정)1997. 3.15 조례 제 360호
(개정)1998. 9.30 조례 제 393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4. 5.15 조례 제 566호
(일부개정) 2004.01.02 조례 제 641 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운용)①기금은 구청장이 관리 운용한다.

②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04.5.15)

제3조(기금의 재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②기금의 이자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②(삭제 2004.5.15)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토목과장
2. 기금출납원: 담당팀장(개정 '98.9.30, '07.1.2)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①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마포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39호 생략

40.「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업무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41호 내지 44호 생략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운용)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관리하고,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임명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소관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중 단위사업비가 10억원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